

## <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과제(아이디어) 제안서>

<b>규제 혁신 제안 과제</b>	"바다는 특구가 아니다. 그래서 조선해양 신기술 실증을 하지 못한다." - 첨단조선해양산업 新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혁신(특구 공간적 한계 극복) 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분 야</b>	■ 신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관련 규정·제도/법령</b>	연구개발특구법, 선박안전법, 해양환경관리법, 해사안전법, 선박법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소관 기관</b>	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규제 내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도한계) 특구법상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인 "신기술실증특례"의 실증 범위가 "특구내"로 한정*됨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구는 지리적 지정 범위인 "육상"으로 한정(바다는 특구가 아님)</li> <li>* 특구법 제16조의2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): ...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<b>특구에서</b>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특례(이하 "실증특례"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 ...</li> </ul> </li> <li>○ (공간규제) 조선해양산업 등 바다(해상)에서 신기술 개발·실증이 필요한 산업*은 실증특례의 범위가 특구내(육상)로 한정되는 것은 치명적인 규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바다·해상관련 新산업(자율주행 선박, 해양드론, 수중탐사 로봇, 新기술 선박 등)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문제점) 첨단 조선해양산업 등 바다(해상)에서 新기술실증이 필요한 특구내 연구소·기업은 "신기술실증특례"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제도를 신청하였으나, 특례제도의 또다른 한계로 (공간규제), 他부처(중기부 등) 규제샌드박스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</li> <li>- 특히, "첨단조선해양산업"이 특화분야인 부산특구에서는 해당 新기술 실증 관련 민원 및 특구 특례제도 활용 포기 사례 발생中</li> <li>* 사례1. 新소재 선박 실증특례 희망 A사 → 해상운항 실증불가 → 신청포기('22.4.)</li> <li>* 사례2. 해양드론 실증 희망 B사 → 바다(섬과 섬 사이)는 실증한계 → 검토중단('22.9.)</li> </ul> </li> <li>○ (개선필요성) 他규제샌드박스에 비해 적용분야 자유도가 높고, 공공기관 및 연구자 중심의 기술실증특례가 가능한 "신기술실증특례"제도의 차별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간적 한계에 따른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 필요 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5px;">&lt;연구개발특구법 대비 他규제샌드박스 기능 비교대조&gt;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연구개발특구법 과기1차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지역특구법 중기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정보통신융합법 과기2차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산업융합촉진법 산업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지역</td> <td>연구개발특구 (기존5개, 강소14개)</td> <td>규제자유특구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국</td> </tr> <tr> <td>적용분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분야</td> <td>지역별 특정한 혁신산업/사업</td> <td>ICT 융합분야</td> <td>산업융합분야</td> </tr> <tr> <td>활용주체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공기관, 연구자(기업)      신기술·제품·서비스 전문기업</td> </tr> <tr> <td>규제 신속처리 특례 임시허가 제도 실증특례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적 용(허가필요여부 및 요건 등 규제확인 요청시 30일 내 회신)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적 용(근거법령 없거나 부적합 시 안정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임시허가)</td> </tr> <tr> <td>차별성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술성숙 및 개발목적 실증특례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/ul>				구분	연구개발특구법 과기1차관	지역특구법 중기부	정보통신융합법 과기2차관	산업융합촉진법 산업부	대상지역	연구개발특구 (기존5개, 강소14개)	규제자유특구	전국		적용분야	전 분야	지역별 특정한 혁신산업/사업	ICT 융합분야	산업융합분야	활용주체	공공기관, 연구자(기업)      신기술·제품·서비스 전문기업				규제 신속처리 특례 임시허가 제도 실증특례	적 용(허가필요여부 및 요건 등 규제확인 요청시 30일 내 회신)		적 용(근거법령 없거나 부적합 시 안정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임시허가)		차별성	기술성숙 및 개발목적 실증특례		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	
구분	연구개발특구법 과기1차관	지역특구법 중기부	정보통신융합법 과기2차관	산업융합촉진법 산업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지역	연구개발특구 (기존5개, 강소14개)	규제자유특구	전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적용분야	전 분야	지역별 특정한 혁신산업/사업	ICT 융합분야	산업융합분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활용주체	공공기관, 연구자(기업)      신기술·제품·서비스 전문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규제 신속처리 특례 임시허가 제도 실증특례	적 용(허가필요여부 및 요건 등 규제확인 요청시 30일 내 회신)		적 용(근거법령 없거나 부적합 시 안정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임시허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차별성	기술성숙 및 개발목적 실증특례		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<p>○ (개선방안) 실증특례의 공간한계 극복<sup>①</sup>, 특구 범위 확장<sup>②</sup>, 준특구* 설정<sup>③</sup> 등 <b>신기술실증특례의 공간적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규정 변경 및 신개념 적용</b></p> <p>* 준특구(가칭): 특정행위(실증특례 등)를 함에 있어서 특구로 간주하는 구역계 설정  * 법 개정시 관련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은 해당조문에 맞춰 함께 변경 → 특구법 제 3조의3(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)에 따른 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협조 노력</p> <p>① (공간한계극복) 특구내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<b>실증특례 제도 자체의 공간적 범위 한계 조항 개정(특구내 한정 문구 삭제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14 526 1420 645"> <tr> <td data-bbox="414 526 598 645"><b>[개정]특구법 제16조의2 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)</b></td> <td data-bbox="598 526 1420 645">…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<b>특구에서(삭제) 적용하지아니하는 규제특례</b>(이하 “실증특례”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 …</td> </tr> </table> <p>② (특구범위확장) 기 지정된 특구의 지정공간(육상)에서 일정 범위까지의 바다(해상)는 특구로 같이 지정하는 범위확장 조항 신설(영해 인정기준 적용 등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14 779 1420 1124"> <tr> <td data-bbox="414 779 598 981"><b>[신설]특구법 제4조의3 (특구의범위)</b></td> <td data-bbox="598 779 1420 981">① 특구지역의 인근에 바다가 있는 경우, <b>영해 및 접속수역법(영해법) 제1조에 따른 영해의 범위내의 수역은 인근 특구지역과 함께 특구로 지정한다.</b>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<b>[신설]</b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14 981 598 1124"><b>(참고)영해법 제1조</b></td> <td data-bbox="598 981 1420 1124">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</td> </tr> </table> <p>③ (준특구설정) “신기술실증특례”제도 등 특정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, 일부지역(바다 등)은 특구로 간주하는 범위 조항 신설(<b>준특구</b>가칭설정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14 1258 1420 1675"> <tr> <td data-bbox="414 1258 598 1361"><b>[개정]특구법 제2조 (정의)</b></td> <td data-bbox="598 1258 1420 1361">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… 13. “준특구”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실증 등 특정행위에 한하여, 특구 외의 지역을 제4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 지역을 말한다.<b>[신설]</b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14 1361 598 1675"><b>[개정]특구법 제4조의2 (특구의변경)</b></td> <td data-bbox="598 1361 1420 1675">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 … ② … ③ 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 ⑤ 특구 인근의 영해(영해법 제1조에 따른 수역), 영공(항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영공통과) 및 가상공간(00법 제0조)은 준특구로 본다.<b>[신설]</b> ⑥ 제16조의 2에 따른 신기술실증특례를 받은 기술 실증시, 4항 및 법 제2조에 따른 준특구의 범위까지도 함께 활용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의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b>[신설]</b></td> </tr> </table>	<b>[개정]특구법 제16조의2 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)</b>	…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<b>특구에서(삭제) 적용하지아니하는 규제특례</b> (이하 “실증특례”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 …	<b>[신설]특구법 제4조의3 (특구의범위)</b>	① 특구지역의 인근에 바다가 있는 경우, <b>영해 및 접속수역법(영해법) 제1조에 따른 영해의 범위내의 수역은 인근 특구지역과 함께 특구로 지정한다.</b>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 <b>[신설]</b>	<b>(참고)영해법 제1조</b>	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	<b>[개정]특구법 제2조 (정의)</b>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… 13. “준특구”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실증 등 특정행위에 한하여, 특구 외의 지역을 제4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 지역을 말한다. <b>[신설]</b>	<b>[개정]특구법 제4조의2 (특구의변경)</b>	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 … ② … ③ 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 ⑤ 특구 인근의 영해(영해법 제1조에 따른 수역), 영공(항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영공통과) 및 가상공간(00법 제0조)은 준특구로 본다. <b>[신설]</b> ⑥ 제16조의 2에 따른 신기술실증특례를 받은 기술 실증시, 4항 및 법 제2조에 따른 준특구의 범위까지도 함께 활용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의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b>[신설]</b>
<b>[개정]특구법 제16조의2 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)</b>	…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<b>특구에서(삭제) 적용하지아니하는 규제특례</b> (이하 “실증특례”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 …										
<b>[신설]특구법 제4조의3 (특구의범위)</b>	① 특구지역의 인근에 바다가 있는 경우, <b>영해 및 접속수역법(영해법) 제1조에 따른 영해의 범위내의 수역은 인근 특구지역과 함께 특구로 지정한다.</b>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 <b>[신설]</b>										
<b>(참고)영해법 제1조</b>	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										
<b>[개정]특구법 제2조 (정의)</b>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… 13. “준특구”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실증 등 특정행위에 한하여, 특구 외의 지역을 제4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 지역을 말한다. <b>[신설]</b>										
<b>[개정]특구법 제4조의2 (특구의변경)</b>	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 … ② … ③ 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 ⑤ 특구 인근의 영해(영해법 제1조에 따른 수역), 영공(항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영공통과) 및 가상공간(00법 제0조)은 준특구로 본다. <b>[신설]</b> ⑥ 제16조의 2에 따른 신기술실증특례를 받은 기술 실증시, 4항 및 법 제2조에 따른 준특구의 범위까지도 함께 활용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의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b>[신설]</b>										
기대효과	<p>○ (단기) 특구 “신기술실증특례”제도의 공간적·산업적 한계 극복을 통한 <b>新산업 활용분야 확장(첨단조선해양산업 등) 등 제도활성화</b></p> <p>○ (장기) 메타버스, 우주 등 시·공간을 뛰어넘는 <b>미래기술 개발 환경을 예측한 실증특례 제도 先정비*로, 급변하는 산업·연구환경 선제적 대응</b></p> <p>* 향후 가상공간, 우주 등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</p>										
비고	○ (개선 의견) 규제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3가지(①~③안)中 실행가능성·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추진 필요										